

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4. 11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결정·공시된 개별(공동)주택가격의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에 추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,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05. 3. 11 ~ 3. 31

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의 증명란중 제6호 기타 제증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【별표1】 제 증 명 등 수 수 료

구 분	기 준	요 액
【증 명】		
6. 기타 제증명		
(1) 기타 시설,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	1통	1,000원
(2) 개별공시지가확인서	1필지	500원
(3) 개별(공동)주택가격확인서	1호	500원

제명 “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및 제3항중 “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”를 “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」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으로, 동항 제2호중 “장애인복지법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”으로, 동항제3호중 “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”을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으로, 동항제4호중 “참전군인등지원에 관한법률”을 “「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8조제4항중 “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”를 “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1] 제증명등 수수료			[별표1] 제증명등 수수료		
구 분	기준	요액	구 분	기준	요액
【증 명】 6. 기타 제증명 (1) 기타 시설,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,000원 (2)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500원 <u><신 설></u>			【증 명】 6. 기타 제증명 (1) 기타 시설,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,000원 (2)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500원 <u>(3) 개별(공동)주택가격확인서</u> <u>1호</u> <u>500원</u>		